

의안번호	2219965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6. 7. 29.
추계번호	26A3566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8조의2 신설 (디자인권·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모니터링)	○ 지식재산처장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(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) 상의 상품 거래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118조의3 신설 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○ 지식재산처장은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	안 제229조제1항(과태료)	○ 제1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18조의2 신설 (디자인권·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모니터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8조의3 신설 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
3	안 제229조제1항(과태료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금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상의 상품 거래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, ②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③개정안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,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
 - **재정지출**은 사이버몰 상의 상품 거래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발생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함에 따라 증가
 - － **안 제118조의2**에 따라 사이버몰 상의 상품 거래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몰에 게시된 상품과 관련된 디자인권 등을 파악하고 동일·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인건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－ **안 제118조의3**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
 - **재정수입**은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해 증가
 - － **안 제229조제1항**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,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(세외수입)이 증가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과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,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모니터링 근거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정보시스템 구축 내용·규모,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 및 액수 등을 알 수 없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행 규모 및 필요 인력의 수·보수 수준 등을 가정하여야 하며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국가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, 현시점에서는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에 불응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에 개정안에 따라 사이버몰 상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행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과,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최근 5년간 디자인권·전용실시권 침해사건 발생 현황

□ 최근 5년간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디자인권·전용실시권 침해사건 현황

(단위: 명)

구 분	'21	'22	'23	'24	'25	'26.6월
입건	72	123	132	105	100	41

자료: 지식재산처

□ 최근 5년간 디자인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접수 건수

(단위: 건)

연도	민사본안(1심) 접수 건수	민사 가처분신청 접수 건수
2020	20	21
2021	28	26
2022	208	14
2023	29	31
2024	19	26
총계	304	118

자료: 국가지식재산위원회 '2024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'(2025. 12.)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처 작성